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9. 3 선고 2023가합100806(본소), 2024가합10053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법 담당변호사 신다솜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박재상

피 고 1.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진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미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9. 3.

주 문

-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 소 청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6,549,2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주위적으로,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 1) 선택적으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24. 4.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또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보험사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3.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 소 청구 취 지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96,237,3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배경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B는 자매이다. 망인은 2022. 3. 1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망인의 생전 재산

망인은 생전 별지 2 목록 기재 아파트를 소유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3. 4. 18. 피고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본인으로 하여 가입 금액 200,000,000원의 F 보험계약(계약번호: G) 및 가입 금액 300,000,000원의 위와 동일한 보험 종류의 계약(계약번호: H)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한편 망인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 사망 후인 2023. 7. 27. 기준으로 위 예금 잔액은 합계 86,549,299원이다.

다. 증여계약서의 존재

망인은 2022. 3. 3. 원고, 지인 I 등과 함께 피고 은행 J지점을 방문한 이후 질병으로 K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에 감염되어 2022. 3. 10. 격리병동으로 이동하여 2022. 3. 14. 사망 당시까지 위 격리병동에 머물렀다.

그런데 망인이 입원한 2022. 3. 3.을 작성일로 하여, 망인이 자신의 전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갑4-1,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여인 E 은 수증인 A 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증여
할 것을 약정한다.

다 음

증여인은 본인 명의로 된 C 은행과 L 은행, M 은
행에서 예치 중인 예금, 연금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과 소유 부동산
산 일체에 대하여 동생인 수증인 A 에게 증여하기로 한다.

2022. 3. 3.

위 증여인 E

위 수증인 A

2.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22. 3. 3.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통해 원고에게 위 아파트와 자신의 금융자산 일체를 증여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망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기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현출된 인영이 망인의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1) 망인의 의사능력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전날인 2022. 3. 2. 원고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갑10). 망인 입원 후 작성된 간호일지에도 ‘2022. 3. 3. 망인이 입원교육, 낙상예방교육, 호출벨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 이해하였다’거나 ‘2022. 3. 3. 숨이 차다고 표현했다’거나 ‘2022. 3. 4. 다른 보호자의 핸드폰 영상 시청에 대하여 티비를 꺼달라고 하였다’는 등의 기재가 되어 있다(을다1 44쪽 이하 참조).

위와 같이 망인이 적어도 2022. 3. 4.까지 타인과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2022. 3. 3.에도 의사능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2) 증인 I 증언

수년 간 원고, 망인과 친분관계를 이어왔던 증인 I은 법정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의사를 직접 들었고, 이에 따라 자신이 컴퓨터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병원에 있는 망인에게 전달하였으며, 망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예금거래 내역

망인은 원고, 증인 I과 함께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22. 3. 3. 피고 은행 J지점을 방문하였다(다툼 없음). 그곳에서 망인은 대여금고 해지신고서(을가4-1), 제신고 신청서(을가4-2), 전표(을가4-3)를 작성하여 피고 은행 직원 N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N는 망인의 정기예금을

해지 처리한 후 그 잔액을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원고 주장대로 망인이 당일 예금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하였다면 은행에서도 자신의 정기예금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이와 달리 망인 자신의 계좌에 예금 잔액을 입금하여 증여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 원고는 N가 망인 요청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N가 망인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 스스로 위 신청서, 전표를 작성한 이상 망인이 작성 서류와 달리 원고에게 예금 잔액을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도장 종류 및 보관

망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통장, 예금거래 신청서, 보험청약서 등 여러 문서들(갑5-2, 5-3, 을가3, 4, 을나1, 2)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그 도장과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다르다. 망인이 종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입원 중이던 2022. 3. 14. 작성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위한 위임장(을다3)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서와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주장대로 망인이 은행 방문 직후 병원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망인이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사용한 여러 도장들을 함께 병원에 가지고 간 경위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한편 위 위임장은 망인 명의로 작성되었지만 실제로는 당시 병원에 격리 중이던 망인 대신 원고가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므로(원고 신문결과, 녹취서 14쪽), 원고가 위임장에 날인된 망인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평소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녹취서 13쪽)에 비추어, 원고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망인 소유 도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5)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원고는 망인의 요청으로 2022. 3. 14.경 위 위임장(을다3)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갑4-2)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은 2022. 3. 10.경부터 코로나19 양성에 따라 음압병실에 격리되었으며 이미 연명의료를 중단할 만큼(을다1 65쪽 참조) 건강이 악화되었으므로 망인이 직접 그 무렵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원고는 위임장에 그 위임사유를 ‘변호사 선임’으로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이 망인이 위독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할 법적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2023.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위임사유인 ‘변호사 선임’은 망인이 아니라 원고의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둔 문구로 이해할 여지가 적지 않다.

6) 종합 결과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종래 망인이 거래에 사용한 적이 없는 도장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사용되었고, 원고는 필요한 경우 그 도장을 확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며 실제로도 망인과 무관한 위임사유를 적시한 위임장을 망인 명의로 작성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자인 2022. 3. 3. 또는 그 이후에 일자를 소급하여 망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도 상정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 명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할 정도의 반증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적극적으로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날인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I의 증언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나, 여전히 망인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도장을 사용한 경위 등을 설명하기에 부족하여 그 증언만으로 진정성립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I 증언에 따르면 망인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할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있는 이상, 문서 작성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에 따른 불이익은 공증 등 더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효력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금채권의 양도 여부

원고는 망인이 피고 은행 직원 N에게 망인의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망인이 자신의 예금을 원고에게 이전할 생각이었다면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달리 N가 망인의 명시적인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예금채권 양도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보험수익자 변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인이 2022. 3. 3. 피고 은행에 방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보험사에게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로 인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B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 은행은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를 피고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보험사

망인 명의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보험수익자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상법은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또는 그 수익자 지정 및 변경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상법 제734조 제1, 2항, 제731조 제1항). 이는 보험이 도박화되고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참조).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이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달라지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수익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가 성립하여 위 타인의 생명보험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위 상법규정이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상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상법규정을 준용하여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거나, 적어도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명백한 의사표시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는 포괄적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망인이 2013. 4. 18. 피고 은행 직원인 N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였고(을나1, 2) 2022. 3. 3. 피고 은행 J지점을 방문하여 위 N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변론 취지, 피고 은행의 2023. 11. 13.자 및 2024. 4. 23.자 각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는지 분명히 알 수 없고, 동행한 원고가 대리하지 않고 망인 본인이 직접 명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망인의 객관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망인이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별표 보험금 지급기준표(을나3 19쪽)상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은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이므로 납입보험료가 그대로 보험금이 되는 것도 아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의 당부(반소)

피고 B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근거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2020헌가4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민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의 유류분반환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반소 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아람, 판사 이영곤, 판사 이두현

별지